

국세청 과세자료 연계에 따른 요양비 청구절차 안내

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하며, 건강보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자등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직접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, '요양기관정보마당'을 통한 요양비 전산 청구시스템을 오픈('21.6.30.)하였으나,

요양비 청구 시 필수 구비서류 업로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요양비 전자처방전에 이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자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

※ ('22.9.1.시행)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자료연계를 위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별표4의제1호(신설)

국세청 과세자료 연계에 따라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3항 및 제5항, 제58조제4항, 별지서식 제18호부터 19호의5까지의 일부개정령안 시행 예정('23.11.20.)됨에 따라,

개정 전(前)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(승인번호, 작성·거래 일자, 합계금액)를 '요양비 지급청구서'에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, 관련 서류 제출 및 보존을 생략이 가능하며, 별지서식 제18호부터 제19호의5호까지 임시서식을 기존서식과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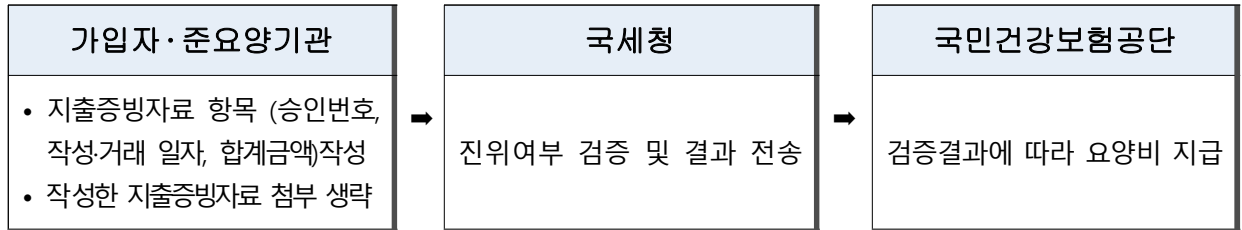
※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반드시 임시서식을 통해 요양비를 청구하시기 바라며, 이때 관련 서류는 업로드(제출)생략 가능합니다.

아울러, 국세청 자료연계에 따른 간소화 서비스는 2023.8.8.부터 '요양기관 정보마당' 청구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며, '요양비 지급청구서' 임시서식 및 전산청구 입력 매뉴얼 등은 공단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업무처리 참고사항 >

◆ **요양비 과세자료(전자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)연계 처리 절차**

- (승인번호 입력 시) 관련서류 제출(업로드)생략, 국세청 과세자료 검증결과에 따라 지급
- (승인번호 미 입력 시) 전자세금계서 및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(업로드)해야 하며, 기존 청구절차 준용



※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정보(승인번호, 작성·거래일자, 합계금액) 기재 시 오기재(오타) 등으로 반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추가등록 임시서식**

《 시행규칙 별지 임시서식 명 》	
전자세금계산서· 현금영수증 발행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 18호 임시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(출산비, 복막투석, 자가도뇨, 기타) • 제 19호 임시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(산소치료) • 제 19호의2 임시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(당뇨병 소모성 재료) • 제 19호의3 임시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(당뇨병 관리기기) • 제 19호의4 임시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(인공호흡기, 기침유발기) • 제 19호의5 임시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(양압기)

-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his.or.kr>) →민원여기요→민원안내→서식자료실
- 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://medicare.nhis.or.kr>) →기본정보→커뮤니티→공지사항

위와 관련하여,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, 고객센터 1577-100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